

광주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15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155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5182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법률상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 항소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득성

변론 종결 2021. 3. 17.

판결 선고 2021. 4. 2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518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3의 나.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109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N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 5항1) 기재 각 토지 중
각 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8.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109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109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사실은, 제1심판결문 제1의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란 기재와 같다(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 제5면 제3행. 제1심판결이 여기에서 설정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A의 처분행위 등

- 1) A은 2016. 8. 12. D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 5토지'라 한다) 중 A 소유의 각 2/6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A은 2016. 9. 8. 이 사건 제4, 5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해 D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9. 8. 접수 제828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3) 이어 2016. 11. 28. D 명의의 위 각 2/6 지분에 관해, 2016. 11.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10916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 사건 제4, 5토지의 각 2/6 지분 및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다)가 마쳐졌다(이하 위 증여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제3처분행위'라 한다).
 - 4) 한편 A은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4, 5토지와 한꺼번에 표시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제4, 5토지의 각 2/6 지분 및 이 사건 제6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처분행위'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제3처분행위와 합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 5) A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11. 28. 접수 제109166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 14호증, 갑 제17 ~ 20호증, 갑 제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A에 대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보다 앞선 2015. 9. 22. 및 2015. 10. 29.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9. 4. 24. 및 2019. 7. 23.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의 양수인인 H 및

J로부터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무자력 요건의 충족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A이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사해행위(사해의사)의 성립

가. 사해행위 일반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부동산의 증여 또는 근저당권의 설정이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 상태였던 채무자 A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A이 F 관련 사업의 영위·확장을 위해 피고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채무자 A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다. 관계되는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 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을 제7 ~ 2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5)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위 다.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 A이 피고로부터 신규 자금을 융통받아 F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었다(이에 따라 채무자 A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의 대표이사였던 A(주식회사 R의 대주주이기도 했다)이 충북 영동으로 공장이전을 시도하면서 이에 필수적인 기계설비 자동화 시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신규 자금을 빌렸고, 그 담보로 A 자신과 그 딸인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에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것이 피고 주장의 요지이다.

2) F은 2016. 7. 27.경 충청북도 및 영동군과 사이에, 충북 영동군 S산업단지에 476억 원을 투자하여 플라스틱 창호 제조 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무렵 피고는 실제로 A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A은 이 돈으로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등에게 설비 자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그런데 피고의 주장이나 A의 증언 내용에 따른다면, A은 앞서 본 거액의 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A은, V 주식회사(이하 'V회사'이라 줄여 쓴다)로부터 150억 원을 2017.

3.까지 F에 투자한다는 확답을 받아, 그와 같은 투자사업을 계속 추진했다는 취지로 진술·증언하였다. 하지만 A은 이 법정에서, 말로써 확답을 주었다는 V회사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V회사이 F 등에 투자할 의향을 담은 서면으로 적어주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16. 8. ~ 2016. 11.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V회사이 F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적어도 투자의향서 등을 통해 투자 의향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와 같이 투자사업의 계속적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무렵 A이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빌려 설비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하여,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5)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W회계법인 소속 X 회계사의 주도·중재에 따라 2016. 11.경 F에 관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V회사 상무이사가 말로써 확실한 투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W회계법인이 작성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을 제28호증)의 작성일자,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모두 끝난 이후인 2016. 11. 30.이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2016. 8. ~ 2016. 11. 28. 사이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A은 아직 V회사의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금전을 빌린 셈이 된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인 2017. 4.경 V회사의 의뢰에 따라 Y회계법인은 F에 대한 재무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1호증). 그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에야 비로소 재무실사보고서가 의뢰·작성된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V회사에 F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V회사의 투자는 결국 무산되었다.2) 여기에다가 사업 투자를 결정·실행하는 증권회사가 일정한 서면화 작업 없이 말로써만 투자 여부를 확답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정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3)

마. 작은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의 항변(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피고의 친구이자 A의 매형 AB의 소개로 만난 A이 F의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는 F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실제로 A에게 5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정이나 AB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등을 내세우지만,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법적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원상회복의 방법·범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에 따라,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제4, 5토지 중 각 2/6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가.의 ②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청구취지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받아들인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나. 한편 제1심판결 주문 제3의 나.항은,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제4, 5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는 2021. 3. 17. 이 법원 제6회 변론기일에, 그 청구취지에서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상대방으로 표시된 'D'을 'A'으로 정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3의 나.항은,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재판장판사강문경

판사김승주

판사이수영

별지

1) 별지 목록 토지의 순번 표시 및 이를 전제로 한 약칭은, 제1심판결과의 연속성 및 가독성의 편의를 위해 제1심판결의 표시를 그대로 따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4.경 갑자기 F, 주식회사 R의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Z 등이 연속 부도되면서 약 5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그 이전인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F의 자력이 충분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회생개시결정문(을 제13호증의 1)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결정문에는, F이 2014년경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면서 수익 없이 약 97억 원 정도를 투자함으로써 현금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했다는 사정도 설시되어 있다.

3) 피고는 2021. 3. 5.자 준비서면의 제출·진술을 통해 X 회계사 및 F 재무 담당자 AA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가로 희망하였다. 그러나 V회사 등으로부터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 과정은,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제출·조사로서 어느 정도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V회사으로부터 투자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체는 A인데, A 본인의 일부 증언에 위와 같이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고, X·AA이 그 확답 여부를 직접 경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